공직선거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 2019. 2. 13. 2018고합480, 49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손정현(기소, 공판), 정동현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임문우 외 2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